

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문서번호 : 인개택총529-1호
 공고일자 : 2021년 3월 17일
 공고기한 : 2021년 3월 17일 ~ 2021년 4월 16일

게시판 : 각 충전소

공 고 문

제 목 : 조합 정관 개정 승인.

조합의 미래 발전을 위한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2020년 제12차 이사회(2020.12.7)에서 심의하고 2021년 제1차 정기대의원회(2021.2.9)에서 개정하여 2021년 3월 16일 인천시로부터 조합 정관 개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.

| 개 정 전 | 개 정 후 |
|---|--|
| 제5조(조합의 사업)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 3. 조합원의 교육훈련 | 제5조(조합의 사업)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 3. 조합원의 교육 <u>및 연수</u> |
| 제7조(조합원의 자격) 4. 조합원 자격 상실자 및 탈퇴자는 (상실, 탈퇴)전까지 납부한 조합비 일체를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없다. | 제7조(조합원의 자격) 4. 조합원 자격 상실자 및 탈퇴자는 (상실, 탈퇴)전까지 납부한 조합비 <u>및 가입금</u> 일체를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없다. |
| 제8조(조합원의 권리) 2. 본 조합 서류 열람시 제 규정에 의한 복제와 유출은 할 수 있다. | 제8조(조합원의 권리) 2. 본 조합 서류 열람은 <u>제 규정에 의하여 열람가능하다. 단, 회계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조합원의 요청시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</u> |
| 제23조(회의의 소집) 2. 총회는 년4회 개최한다.(정기1회, 임시3회) | 제23조(회의의 소집) 2. 총회는 년4회(<u>정기1회, 임시3회</u>)개최를 기본으로 하며, 임시회는 필요시 추가 개최할 수 있다. |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증일

